

2024년도 제7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

2024년도 제7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24일

인천광역시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직급	근무기간	채용인원	담당업무
배수펌프장 관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임용일~1년 (주 35시간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삼산2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(법정 선임)구 관리 펌프장 시설물(전기, 기계, 자동제어 등) 관리지하차도 시설물(전기, 기계, 자동제어 등) 관리상시·법정 점검점검결과 및 펌프장 운영 중 발생하는 소규모 보수 사항 처리펌프 가동 필요 시 비상근무 등
물리치료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임용일~1년 (주 35시간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재활치료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재활대상자 등록 및 관리
영양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임용일~1년 (주 35시간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영양상담실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영양상담 및 체성분 측정
간호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임용일~1년 (주 35시간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금연클리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금연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상담

-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(직권면직)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
-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근무기간 연장 시 총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※ 1명의 응시자는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, 이중 응시할 수 없음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(물리치료사, 영양사, 간호사)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)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 법령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성별, 거주지 제한 없으며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인원제한	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만점의 5% 또는 10%	선발예정인원의 30% 이하	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원제한 미적용	두가지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선택
의사상자 등	만점의 3% 또는 5%	선발예정인원의 10% 이하		

- 취업지원대상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10%)을 가산

- 의사상자 등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6조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(3% 또는 5%)을 가산

나. 개별 자격요건

채용분야	자 격 기 준		
배수펌프장 관리	<p>삼산2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가능한 자</p> <p>※ 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[별표8]에 의거 법정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적용</p> <p>(1) 전기·안전관리(전기안전) 분야 기술사* 자격소지자,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* 전기·안전관리(전기안전) 분야 기술사 :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발송배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, 철도신호기술사, 전기철도기술사</p> <p>(2)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</p> <p><관련분야 실무경력> -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확인</p>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%를 적용하는 경력</td> <td> <p>가.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·감리·유지보수·관리·진단·점검·검사에 관한 기술업무</p> <p>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다.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교육관계법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, 「기능대학법」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·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전력기술 관련단체·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</p> </td> </tr> </table>	1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%를 적용하는 경력	<p>가.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·감리·유지보수·관리·진단·점검·검사에 관한 기술업무</p> <p>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다.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교육관계법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, 「기능대학법」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·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전력기술 관련단체·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</p>
	1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%를 적용하는 경력	<p>가.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·감리·유지보수·관리·진단·점검·검사에 관한 기술업무</p> <p>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다.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교육관계법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, 「기능대학법」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·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전력기술 관련단체·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</p>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%를 적용하는 경력</td> <td> <p>가.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·제조·검사 등 기술업무</p> <p>나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설비 중 전기분야 설계·공사·감리·검사·정비 등의 기술업무</p> <p>다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계량 기술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기술 업무</p> <p>마. 건설관계법에 따른 전기관련 기술 업무</p> <p>바. 전기기계기구의 설계·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</p> <p>사.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전자·통신기술 직렬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통신기술·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·전자통신 기술에 관한 업무</p> <p>아. 전자·통신관계법에 따른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</p> </td> </tr> </table>	2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%를 적용하는 경력	<p>가.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·제조·검사 등 기술업무</p> <p>나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설비 중 전기분야 설계·공사·감리·검사·정비 등의 기술업무</p> <p>다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계량 기술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기술 업무</p> <p>마. 건설관계법에 따른 전기관련 기술 업무</p> <p>바. 전기기계기구의 설계·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</p> <p>사.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전자·통신기술 직렬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통신기술·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·전자통신 기술에 관한 업무</p> <p>아. 전자·통신관계법에 따른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</p>
	2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%를 적용하는 경력	<p>가.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·제조·검사 등 기술업무</p> <p>나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설비 중 전기분야 설계·공사·감리·검사·정비 등의 기술업무</p> <p>다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계량 기술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기술 업무</p> <p>마. 건설관계법에 따른 전기관련 기술 업무</p> <p>바. 전기기계기구의 설계·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</p> <p>사.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전자·통신기술 직렬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통신기술·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·전자통신 기술에 관한 업무</p> <p>아. 전자·통신관계법에 따른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</p>	

채용분야	자 격 기 준
물리치료사	「의료기사법」제4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
	<우대요건>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면접시 가점 2점 부여 -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: 관공서, 병원, 대학, 기업에서 그룹 또는 개인별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업무 수행
영양사	「국민영양관리법」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
	<우대요건>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면접시 가점 2점 부여 -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: 관공서, 병원, 대학, 기업에서 체성분 분석, 맞춤형 영양상담 서비스 업무 수행
간호사	「간호법」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
	<우대요건>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면접시 가점 2점 부여 -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: 관공서, 병원, 대학, 기업에서 금연클리닉 운영, 간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 수행

- *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.
- *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

다. 근무경력의 인정 등

○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.

- ①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(주 40시간)
- ②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
<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>

$$\text{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} = \text{시간선택제 근무기간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$$

- * 1개월은 30일로 일괄 적용
- * '일'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

- ③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

4. 선발 방법

- 1차 시험 : 서류전형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2차 시험 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 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5. 시험 일정

구 분	세 부 일 정	비 고
응시원서 접수	2024. 11. 5.(화) ~ 11. 7.(목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11. 11.(월) 한	
면접시험	2024. 11. 18.(월) ~ 12. 6.(금) 중 1일	
면접합격자 발표	별도공지	

※ 공고 및 발표는 부평구 홈페이지(www.icbp.go.kr) > 소통과 참여 > 부평알림 > 채용공고 > 임기제&신규공무원 채용공고에 게시

※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,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4. 11. 5.(화) ~ 11. 7.(목) 3일간, (09:00~18:00)

나. 접수방법 *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- 방문접수 :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(부평구청 5층)

(접수시간) 09:00 ~ 18:00 *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* 부평구 수입증지 : 1층 하나로민원과 판매(5,000원)

- 등기우편 접수

(접수인정)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

*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

*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30) 유의

(주 소)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(부평동),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

*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 (☎ 032-509-6134, 6136)

다. 제출서류

연번	서류항목	비고
1	응시원서 1부 * (방문접수) 부평구청 1층 하나로민원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 제출 * (우편접수)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(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)	서식 1
2	이력서 1부 *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미인정)	서식 2
3	자기소개서 1부	서식 3
4	직무수행계획서 1부	서식 4
5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	서식 5
6	해당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1부 *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,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* 근무기간, 부서, 직책,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* 비상근,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함 *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, 연락처, 날인(서명) 이 있어야 함 *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*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·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 제출 *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 *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*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하여 제출	서식 6
7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 *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	-
8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*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	자격 증빙에 필요한 경우 제출
9	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* 원서접수 시 자격증 원본 지참(확인),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 지참	
10	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(수상실적, 연구실적, 어학능력 등)	
11	가산특전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) 증빙자료	

*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보수 및 복무

○ 보수

채용분야	직 급	연 봉 (주 35시간 기준)	산 출 내 역
배수펌프장 관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36,358천원	41,551천원(8급 상당 연봉하한액) × 35/40시간
물리치료사, 영양사, 간호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22,440천원	51,290천원(9급 상당 연봉상한액) × 50% × 35/40시간

- * 근거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별표 13('24.1.5.기준), 제35조
- *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*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○ 복 무

채용분야	직 급	근무장소	근무시간
배수펌프장 관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및 구 관리 배수펌프장 사무실	주 35시간 (1일 7시간, 주 5일)
		※ 기상 여건에 따라 필요시 비상근무 실시	
물리치료사, 영양사, 간호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부평구 청천보건지소	주 35시간 (1일 7시간, 주 5일)

- *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하되,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
- * 약정해지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해당 시(업무태만, 근로수행능력 부족,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)

8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 반환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(또는 임용)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,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
*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같음

○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부평구 홈페이지(<http://www.icbp.go.kr>)에 공고합니다.

○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○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(지방공무원법 제56조)

-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·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○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채용절차 관련 : 총무과 인사팀(☎ 032-509-6134, 6136)

※ 직무내용 관련

채용분야	관련부서	연락처
배수펌프장 관리	기후변화대응과	☎ 032-509-6597
물리치료사, 영양사, 간호사	청천보건지소	☎ 032-509-8963 ☎ 032-509-8964